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최민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443

발의연월일: 2025. 5. 9.

발 의 자:최민희·김 현·문금주

박지원 • 박해철 • 복기왕

이광희 • 이기헌 • 장종태

정동영 · 정일영 · 한정애

황정아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형법」상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는 국가의 헌정질서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서 고위공직자가 개입할 경우 그 파급력 이 막대함.

특히 국정농단이나 계엄령 문건 사안처럼 정권 핵심부의 개입이 의심되는 경우에 독립적 수사기구의 개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, 현행법은 해당 범죄를 포함하지 아니하여 실제 고위공직자가 이에 관여하더라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임.

이에 「형법」상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를 고위공직자범죄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함(안 제2조).

법률 제 호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호 자목(종전의 아목) 중 "마목까지의"를 "바목까지의"로 한다.

바. 「형법」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,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및 제103조의 죄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3. "고위공직자범죄"란 고위공	3
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	
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	
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죄를 말한다. 다만, 가족의 경	
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	
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	
다.	
가. ~ 마. (생 략)	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바. 「형법」 제87조부터 제9
	0조까지, 제92조부터 제10
	1조까지 및 제103조의 죄
<u>바.</u> ・ <u>사.</u> (생 략)	<u>사.</u> ・ <u>아.</u> (현행 바목 및 사목
	과 같음)
<u>아.</u> 가목부터 <u>마목까지의</u> 죄	<u>자.</u> <u>바목까지의</u>
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	
인한 「범죄수익은닉의 규	
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	
률」 제2조제4호의 범죄수	

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	
3조 및 제4조의 죄	
4. • 5. (생 략)	4.•5. (현행과 같음)